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8,388,186	10,751,646
일반회계	329,068,227	9,872,047
특별회계	29,319,959	879,599
기타특별회계	29,319,959	879,599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462,188	73,866
섬진강댐특별회계	5,132,000	153,96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634,708	109,041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특별회계	5,792,798	173,78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62,865	13,886
기반시설특별회계	79,751	2,3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867,958	326,03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87,691	26,631

제 2 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8,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058,772천원」과 같다

제 6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7 조 2016년도 계속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최종 추경예산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한다